

법학전문대학원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세칙

제정 2010년 08월 26일, 개정 2011년 02월 25일

제1조 (목적) 이 시행세칙의 목적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(이하 '대학원'이라 한다)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제2조 (적용범위) 대학원의 학점인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3조 (사무관장) 대학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교학부원장이 관장한다. <개정 2011.2.25>

제4조 (학점인정의 기준) ① 대학원은 통산 15학점까지 다른 대학원 또는 비학위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 학점인정에 따라 인정된 학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(이하 '학칙'이라 한다) 제41조에 따른 필수과목군 및 기반과목군의 최소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 <개정 2011.2.25>

③ 특성화 분야별 과목의 경우 동일과목으로 인정되어 학점을 인정받으면 학칙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특성화 과목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.

④ 학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수학점은 학칙 제41조 제1항의 졸업을 위한 최소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

제5조 (기타)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가 결의하고 원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 <2010. 8. 26>

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세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부 칙 <2011. 2. 25>

제1조 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시행세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세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